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입니다.
- 지난 5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.
-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지하개발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고,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격년 주기의 정기점검을 통해 지하시설물과 지반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아울러,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.
-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, 시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